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10년 유지된 관람료를 국내유일의 체험형 탐방동굴 운영형태에 적정한 관람료로 인상 추진
- 폐관 및 일반재산 관리이전된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체험관 명칭 및 관람료 삭제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체험관 명칭 삭제(안 제2조,4조,18조)
- 나. 【별표1】 백룡동굴 관람료를 어른 개인 및 단체 5,000원 인상, 어린이·청소년·군인 개인 5,000원 인상, 어린이·청소년·군인 단체 3,000원 인상 (안 제5조 별표1)
- 다. 【별표1】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람료 삭제(안 제5조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0. 09. 03. ~ 2020. 09. 24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 “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“백룡동굴”이라 한다), 평창 동강민물고기생태관(이하“생태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“백룡동굴”이라 한다)”이라고 한다.

제2조제3호의 “백룡동굴과 생태관을”을 “백룡동굴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생태관 및 백룡동굴”을 “백룡동굴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제4호의 “생태관 또는 백룡동굴”을 “백룡동굴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]

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5,000	10,000
어 른	20,000	15,000

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시설물"이란 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"백룡동굴"이라 한다),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(이하"생태관"이라 한다),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, 동강스카이라인 등 평창군에서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3. "관람료"란 <u>백룡동굴과 생태관</u>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(이하 "백룡동굴"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 백룡동굴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관람시간) ① <u>생태관 및 백룡동굴의</u>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.</p>	<p>제4조(관람시간) ① 백룡동굴의 -----</p> <p>-----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18조(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생태관 또는 백룡동굴, 시설</u> 운영측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백룡동굴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0,000</td> <td>7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1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,5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2,000</td> <td>1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0,000	7,000	어 른	15,000	10,000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,500	1,000	어 른	2,000	1,500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</u>(제5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개 인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단 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</td> <td>1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어 른</td> <td>20,000</td> <td>1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</p> <p><표 삭제></p>	구 분	개 인	단 체	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5,000	10,000	어 른	20,000	15,000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0,000	7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1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,5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2,000	1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개 인	단 체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	1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 른	20,000	1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붙임1]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문화관광과장
연락처	(033) 330-2250

관 계 법 령

《관광진흥법》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

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